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보완 과제

박홍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개정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현실에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누적투표제의¹⁾ 채택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소수주주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거나 6 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투명성 제고나 기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하여 여타 법률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즉,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부여나 지주회사의 허용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기업 구조 개혁 촉진 방안(4월 14일 발표)과 관련한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머리말

작년 외환 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 구조 조정이 재계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정부도 이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 10여 개의 법률 개정¹⁾에 이은 이번 상법 개정안(5월에 국회 제출 예정)도 그 일환이다.

3월말 발표된 상법 개정 시안도 기

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증권거래법에서는 빠져 있는 경영자 책임의 엄격화 관련 조항이나 누적투표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합병의 간소화 등을 포함으로써 구조 조정을 위한

1) 2월에는 조세 관련 법률(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퇴출관련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외부감사법, 외자도입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었음.

기업 조직 개편을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 구조 개편이나 구조 조정의 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 조항을 살펴보면, 현실에서 오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조항들도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서나 국회 법률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그것이 부작용없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영자 책임의 엄격화

그동안 대기업 총수는 물론 기초실과 비서실의 임원은 사실상 계열사 인사나 업무에 관한 지시·관여를 하는 등 그룹 경영에 관여해왔으나, 이사로는 취임하지 않으므로써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종래 상법상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도 주로 업무 집행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자금의 조성, 리베이트의 수령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상법 개정안에서는 업무 집행 관여자(사실 상의 이사)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책임 강도가 한 단계 높은 충실 의무로 변경하여 건실한 주식회사 지배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기초실 또는 비서실 임원도 사실상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로 간주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모든 주주가 원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주총에서의 정관 변경 등을 통한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의무를 주의 의무에서 충실 의무로 강화하여 이사가 전심전력으로 회사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 소수주주권의 강화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경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²⁾의 권리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고, 누적투표제를 신설하였다.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등은 그 권리 행사 주식 비율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되었다(〈표〉 참고). 특히, 대표소송권의 경우 종전 5%에서 1%로 낮추어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에 대한 소수 주주의 견제를 가능케 하였다.³⁾

그리고 누적투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대주주의 영역이었던 이사 선임에서도 소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 주주의 대표가 사외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3) 구조 조정 절차의 간소화

기업 조직의 재편은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경영 의사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관련 법 제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합병의 경우에도 매우 경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분할을 하려 해도 근거법이 없어서 우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2) 소액 주주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도 채 안 갖고 있는 사람(법인세법에서는 1% 미만의 소유와 1억 원 미만 소유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소액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주의 권리를 갖고 있음.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권이나 대표소송권, 장부열람권 등은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 및 감사해임권은 0.5% 등 소액 주주 혼자든 소액 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이 정도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 주주라 부르고 그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함.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 주주는 소수 주주라고 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 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음.

3) 증권거래법과 달리 이번 상법 개정인의 권리 행사 주식 비율이 높은 것은 증권거래법의 경우 규모가 큰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은 상장 기업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에 우선함.

〈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항목	현행	개정안	증권거래법
경영자 책임 강화	이사의 총실 의무 조항	없음	신설	규정없음
	경영 집행 관여자 책임 조항	없음	신설	규정없음
소수주주권 관련	대표소송제기권	5%	1%	0.05%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5%	3%	0.5%(0.25%)
	위법 행위 留止청구권	5%	1%	0.5%(0.25%)
	주주제안권	없음	1%	1%(0.05%)
	회계장부열람권	5%	3%	1%(0.05%)
	주주총회소집권	5%	3%	3%(1.5%)
	업무검사청구권	5%	3%	3%(1.5%)
	누적투표제	없음	신설	규정없음
기업 구조 조정 관련	회사 분할	없음	신설	규정없음
	간이합병제	100% 자회사에 한해 허용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소유한 경우	규정없음
	소규모합병제	없음	신설	규정없음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2개월	1개월	규정없음
	합병 등기시 기일 기재	임의적 기재 사항	필요적 기재 사항	규정없음
주식제도 관련	주식 분할 및 최저 액면가	5,000 원 이상	100 원 이상	최저 액면가 100 원 이상
	중간배당제도	없음	신설	규정없음

주: 증권거래법 항목에서 () 안은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 기업에 해당.

합병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기업 구조 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사분할제도의 신설과 합병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회사 분할⁴⁾의 경우 그 범위를 물적 분

할 및 인적 분할을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물적 분할만의 경우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사업 분야의 전문화 또는 불요 사업 부문(부진 사업, 적자 사업)의 분리에 의한 경영 효율화, 이익 분산에 의한 절세 등 기업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합병의 경우 소규모합병제(Small

4) 회사(피분할 회사)의 영업 재산이 분리되어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 포괄 승계되는 동시에 피분할 회사의 주주는 기존 또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 상의 특수제도라고 할 수 있음.

scale merger)를 신설하고 간이합병제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소규모합병제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 회사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합병교부금이 존속 회사 자산의 2% 미만일 경우, 존속 회사의 주총 승인없이도 합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합병 등기를 할 때 합병 기일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등기의 기산점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간이합병제(Short form merger)의 경우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는 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의 경우에만 허용하였지만, 개정안에는 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허용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형태의 회사 합병에서

현재 반드시 선임토록 돼있는 설립위원회를 폐지하고 창립총회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시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을 현행 2 개월에서 1 개월로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 등 약식 절차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관한 공시는 강화하였다.⁵⁾

4) 주식제도의 개편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주식 관련 제도를 개편하였다. 주식분할제의 경우 현재는 1 주의 최저 액면 가격이 5,000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100 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증진하고 신주 발행시 기업 자금 조달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중간배당제도를

5) 합병 계약서의 사전 공시와 합병에 관한 주요 서류의 사후 공시를 의무화하였음. 이를 위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2 주 전부터 합병 후 6 개월까지 회사는 합병 계약서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배정에 관한 서면, 최근 6 개월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본점에 비치토록 하였음. 그리고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이 열리지 않거나 주총에서 반대 결의가 없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이는 주식 투자에 의한 투하 자본의 회임 기간을 단축하고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건전한 투자 관행을 촉진하며, 연 2 회 배당으로 기업의 이익 배당에 대한 현금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들은 대체로 타당하다. 그러나 향후 운영 상의 혼란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항은 적절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업무 집행 관여자의 책임 조항이다. 개정안에서 법적 근거없이 그룹 업무에 관여했던 총수나 비서실 또는 기조실 임원에 대해 책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업무 집행 관여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배상 사건이 발생할 때, 사실 상의 이사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同조항에 업무 집행 관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누적투표제의 도입 조항이다. 누적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정보의 부족, 해당 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결여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누적투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회사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소수주주권의 행사 조항이다.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를 조건으로 거액의 주주 대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함에 따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법원에서는 주주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악의가 있는 원고측에 대해 거액의 담보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수

주주권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행사 요건에서 증권거래법처럼 해당 주식의 보유 기간을 6 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지난 2월의 관련 법률 개정과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투명성 제고나 기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확충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만으로 기업 투명성 제고나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제한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사외이사제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대주주가 주총을 지배하고, 소액 주주는 단기의 자본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현실에서 이들 제도의 기업 투명성 제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

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와 경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 우려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 조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구조 조정, 자금 조달, 경영 투명성 제고 면에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발표된 기업 구조 개혁 촉진 방안과 관련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과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부실기업정리회사 설립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한 관련 세법 손질도 필요하다. **HRI**